

## 석유대체연료 제조·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14일
신청인	대표자 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)	
	주소		
	상호	전화번호	
	소재지		
신청 내용	변경내용	[ ]성명 또는 상호 [ ]대표자 [ ]주된 영업소 소재지 [ ]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(소재지·규모) [ ]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(소재지·제조능력) [ ]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(油種)	
	변경 전		
	변경 후		
	변경사유		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32조제2항·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대체연료 제조·수출입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###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	수수료
1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33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없음
2.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	
3. 사업계획서 및 품질시험서(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(油種)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	

#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#### 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 및 제출	→	접수	→	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	→	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	→	등록증 작성	→	등록대장 기재	→	등록증 발급
신청인		한국 석유관리원		한국 석유관리원		산업통상자원부 (석유산업과)		산업통상자원부 (석유산업과)		한국 석유관리원		

###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

1. 양도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34조,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,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(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)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.

가. 최근 3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

처분받은 날	행정처분 내용	행정처분 사유

나. 행정처분 절차 진행상황

적발일	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 위반내용	진행 중인 내용

1)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"없음" 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.

2) 양도·양수등록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,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의 내용을 수정하게 해야 합니다.

2.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8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양도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주소

양수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주소